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13 발의연월일: 2025. 5. 1.

발 의 자:윤준병・김기표・박용갑

허성무 • 정동영 • 이성윤

복기왕 · 박희승 · 송옥주

주철현 · 김태선 · 이원택

임미애 · 조계원 · 허종식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가 저출산·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.

그러나, 건설노동자·가사노동자·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각개별법을 통해 종합적·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,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.

이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보 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, 지위 향상 및 권리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명시, 근로계약 형태, 근로시간, 휴업수당, 적정임금, 퇴직급여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).
- 다. 돌봄노동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, 안전휴가, 질병휴가, 휴 게시간 및 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).
- 라. 업무상 재해와 업무증지, 이용자등의 폭언등에 대한 조치, 인권교육,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음장치 등의 설치 사실의 고지 등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함(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).

돌봄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돌봄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,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고용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돌봄서비스"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출산을 전후한 여성,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 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안전관리, 신체적·정신적 활동 지원,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 - 2. "돌봄노동자"란 계약 형태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가 사근로자
 - 나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

- 다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, 같은 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및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
- 라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·서비 스 관련 종사자
- 마.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8의 산후조리도우미 및 「장애인복 지법」 제37조제1항의 산후조리도우미
- 바.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
- 사.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
- 아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육아도우미
- 자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(어린이집의 원장을 제외한다)
- 차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 원인력
- 카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

과정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원이 아닌 사람

- 타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 재활시설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파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특수교육 지원 및 돌봄 인력
- 하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3. "사용자"란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돌봄노동자를 이용하여 제7호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 하는 자
 - 나. 돌봄서비스를 중개·알선하는 자
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4. "돌봄서비스 이용자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"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.
- 5. "방문 돌봄노동자"란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 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6. "시설 돌봄노동자"란 사용자가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7. "돌봄서비스 제공기관"이란 돌봄노동자를 통하여 돌봄서비스를

직접 제공하거나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중개·알선하는 기관을 말한다.

- 8. "돌봄서비스 관리기관"이란 돌봄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돌봄노동자의 재해예방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,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등은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돌봄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돌봄노동자에 대한 각호의 지워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
 - 2.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지원
 - 3. 돌봄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, 상담 등 돌봄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·이용자 가족(이하 "이용자등"이라 한다)은 돌봄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, 돌봄노동자에게 보장된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적용범위) 이 법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돌봄노동자의 근로관계 및 돌봄노동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이용에 관

하여 적용한다.
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강화된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보다 그 내용이 돌봄노동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및 처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장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

- 제6조(근로조건의 명시) ①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 - 1. 임금(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방법을 포함한다)
 - 2. 제9조에 따른 최소근로시간
 - 3. 제3장에 따른 휴가
 - 4. 돌봄노동자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종류와 내용
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
 -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돌봄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

- 는 돌봄노동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「근로기준법」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 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제7조(근로계약 형태)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없다.
 - 1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2 호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·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
 - 2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 호에 따른 근로자의 학업·직업훈련 등으로 인한 인력 충원이 필 요한 경우
 - 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돌봄 관련 재정지원 직접 일 자리사업에 필요한 경우
- 제8조(근로시간) 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② 사용자는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

급하여야 한다.

- ③ 사용자는 돌봄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간근로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- 1.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
- 2.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계가족의 돌봄을 위한 경우
- 제9조(최소근로시간 보장)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돌봄노동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 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(근로시간의 산정) ① 돌봄노동자가 업무의 시작 전 및 종료 후 교대 노동자에게 이용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인수·인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상태 및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알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.
 - ② 방문 돌봄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 장소 간 이 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. 이 경우 이동거리 및 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 - ③ 돌봄노동자에 대한 기술·업무능력 향상 및 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.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·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근로시간 단축의 예고 등) ①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전 30일간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사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중 단되거나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중단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국가등은 30일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휴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휴업수당) ① 소정근로시간이 돌봄노동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단축된 경우, 사업주는 돌봄노동자에게 단축된 시간에 대하여 「근 로기준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돌봄 제공이 중단·단축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본다. 이 경우 사업주는 돌봄 제공이 중단·단축된 시간 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에게 「근로기준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 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사정의 구체적인 기준 등 휴업수당 지급에
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3조(적정임금의 보장 등) ①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안정과 교육·문화·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돌봄노동자의 기본 시간급(時間給)을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제14조(퇴직급여의 지급) ① 사용자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 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돌봄노동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퇴직급여의 대상, 지급 기준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돌봄노동자의 휴식

- 제15조(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) ①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의 기준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안전휴가)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노동자에게 필요한

기간의 안전휴가를 주어야 한다.

- 1. 돌봄노동자가 근무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감염병에 걸리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
- 2. 돌봄노동자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경우
- 3. 돌봄노동자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건 강진단을 받는 경우
- 제17조(질병휴가) ① 사용자는 돌봄노동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어야 한다.
 - ② 사용자는 돌봄노동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중 수 있다.
 - ③ 돌봄노동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휴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사용자는 병가를 사용하려는 돌봄노동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대체인력의 제공 또는 비용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제18조(휴가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알선·제공 등 지원) 국가등은 돌 봄노동자에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 체인력을 알선·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9조(휴게) ① 사용자는 시설 돌봄노동자의 「근로기준법」 제54조 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유지 하여야 한다.
 - ② 사용자는 방문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방문 돌봄노동자의 「근로기준법」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야 함을 고지하고,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등은 제1항의 인력 충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20조(휴게보상) ① 단독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돌봄노동자가 이용자의 연력 또는 장애로 인하여 돌봄을 중단할 수 없어 제 19조의 휴게시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 및 방문 돌봄노동자의사전 동의를 받아 유급 휴게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유급 휴게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지원

제21조(업무상 재해를 입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) ① 정부는 돌봄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·질병·신체장애·사망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치료·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,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정부는 돌봄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·질병·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치료·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2조(이용자등의 폭언등에 대한 조치) ①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이용자로부터 폭언, 폭행, 그 밖에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(이하 "폭언등"이라 한다)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폭언등이 이용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으로 인한 경우 2인 이상의 돌봄노동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한 경우 이를 즉시 돌봄서비스 관리기관에 알리고 이용자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23조(돌봄노동자의 업무중지) ① 돌봄노동자는 업무 중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장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해당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
 - ② 돌봄노동자가 제1항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긴급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돌

봄서비스 관리기관에게 알려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④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업무중지를 사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4조(인권교육) ① 사용자 및 돌봄노동자는 이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보장과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인권교육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(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음장치 등의 설치 사실의 고지) ① 사용자 및 이용자등은 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녹음장치 등 녹음 및 촬영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를 돌봄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녹음장치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이용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 - 2. 이용자 및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

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

3. 이용자 및 돌봄노동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

제5장 보칙 및 벌칙

- 제26조(통보의무) 국가등과 돌봄서비스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이 법 또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7조(벌칙)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7조를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2.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
 - 3.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급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한 경우
 -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

- 3. 제9조를 위반하여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한 경우
- 5.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
- 6.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
- 7. 제14조를 위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
- 8. 제16조를 위반하여 안전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
- 9.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
- 제28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근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지 아니한 경우

- 3.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돌봄서비스 관리기관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이용자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제24조를 위반하여 사용자 및 돌봄노동자가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하 경우
- 6.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및 이용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음장치 등의 설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
- 7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녹음장치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